

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제1차 운영위원회
【2023. 10. 25.(수) 10:00】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
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
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3년 10월 25일
전문위원 정 하 근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3 - 113
- 나. 발 의 자: 김지수 의원 외 10명
- 다. 발의일자: 2023년 10월 13일
- 라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6일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(안 제3조)
- 나.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의2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취지

- 2023.3.21.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의2의 시행(2023.9.22.)에 따라 의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을 제정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3조 :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
- 안 제4조 :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함
- 안 제5조 :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

다. 종합의견

- 「국회법」 제33조에서는 ‘교섭단체’를 20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기본요건으로 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「지방자치법」을 근거로 한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통해 그 구성 및 운영 해야함.
- 이런 측면에서 본 조례는 교섭단체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 취지와 함께 협의 기구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본 조례안에서 교섭단체 구성 최소 의원 수를 3명으로 한 것은 타 자치구 사례를 보았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, (붙임#1 타 자치구 교섭단체 구성 관련)
-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수의견의 청취 방법과 운영위원회와의 기능 중복, 관련 예산의 배분 기준, 교섭단체의 구체적인 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의회 자체 내규 마련을 통해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라. 참고사항

-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은 현재 시행 중이지만, 교섭단체지원 예산의 반영이 2024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며, 2024년 기준 교섭단체 관련 지원 예산은 총액 1,700만원으로 확인됨.
- 별지 제2호 서식 상단의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는 자구 수정을 통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수정해야 함
 - 경미한 자구 수정이므로 위원회 심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본 회의 의결 후 의안을 이송할 시기에 수정 필요

※참고 :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」

제34조(의안의 정리)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축되는 조항·문구·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붙임#1**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 교섭단체 구성 관련****□ 제정 현황(2023.09 기준)**

NO	지역	단체인원	지원 예산액
1	서울특별시	10명 이상	월 416만원
2	강동구	3명 이상	월 60만원
3	광진구	3명 이상	미정(2024년)
4	양천구	3명 이상	미정(2024년)
5	중구	3명 이상	미정(2024년)
6	성북구	3명 이상	미정
7	노원구	5명 이상	미정
8	종량구	3명 이상	미정

※ 성북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에, 노원구 「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」에 명시

- 서울특별시와 7개 자치구에서 제정되었거나 제정 예정임.

「지방자치법」

제63조의2(교섭단체)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

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